

국내외 안전성평가 제도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연구

강원식* · 김영두*** · 최운규** · 송태한** · 김주환**

* , ** 선박안전기술공단

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through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Assessment System

Won-Sik Kang^{*} · Young-Du Kim^{***†} · Woon-Kyu Choi^{**} · Tae-Han Song^{**} · Ju-Hwan Kim^{**}

* , **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

핵심용어 : 해상교통안전진단, 국내외 사례분석, 평가기법, 기술기준, 개선

Key Words :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, Cas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, Assessment method, Technical regulation, Improvement

I. 연구개요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안전진단제도의 본격적인 운영 후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있으나 평기기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
 - 안전진단서 제출면제 대상사업 등 절차상 개선이 필요
 - 안전진단 수행 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연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 추진 필요
 - 안전진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
 - 안전진단시행지침 등 지침기준 개선(안) 마련
 - 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연설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진단대행기관 연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수립
 - 안전진단 수행절차 및 제도 개선 등



II. 국내 안전진단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

1. 선행 연구분석

-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고찰 관련 연구보고서, 논문, 발표자료 등 조사 및 개선도출 항목 선정
 - 대상사업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 사전에 평기한목과 범위를 결정하는 **스크핑 제도** 등 도입
 - **향안기본계획**의 계획단계에서 해상교통안전성 강도 **변경**
 - **스크립팅 및 스포드 제도**의 도입으로 안전진단단행 전에 안전진단항목 등의 결정
 - 안전진단수행 중 **자문위원회** 등을 구성으로 안전진단 결과의 질적 향상을 필요
 - 민간위생증명, 전문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등의 **심사위원회 개선**
 - 면제사업 조항을 도입하거나 경도위원회 등을 통해 **제출면제사업 기준**을 명확히 제시
 -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, 법률적 지위 확보
 - **안전진단 결과의 신속성**을谋求 필요
 - 운영단계에서 신속성을 검토하는 **시속진단 도입**
 - 선박조종석 라이선스 평가 수행 시 자문회의 구조, 자연환경 등 시뮬레이션 조건 개선 필요
 - 계류안전성 평가 조건, 분석방법 및 결과도출 관련 **개선안 마련** 필요
 - 진단 평가 기술기준의 다양한 개선안 수용 필요
 - **안전진단 기술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**
 - **자단비율의 역할**, **자단비율의 미적 시인여부** 면밀히 재검토



III. 안전성 평가 해외사례 분석

1. 해외사례 분석

- 해상교통안전성 평가관련 국내 제도와 해외사례 6개를 비교 요약함

V. 결언

1. 개선 필요사항 요약

- 선행 연구, 해외사례조사 및 심층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, 우선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5개 과제로 정리함.

- 선박길이 100미터 미만 선박의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제외 재검토
 - 심사위원회 역할 재정립
 - 안전진단 항목별 기술 기준 개정안
 -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조항 추가 반영
 - 사업 종료 후 안전진단결과 이행여부의 사후 확인 조항 반영

- 당장 제도에 반영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의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7개 과제로 정리함

- 한반 전체의 안전성 평가 (SWA 벤치마킹)
 - 스크리닝(Screening) 및 스코핑(Scoping) 제도
 -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사유 규정의 재정비
 - 향안법상 향안기본계획 수립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기 조항 반영
 - 안전진단수행 품질 후 사후진단제도의 도입 필요성
 - 안전진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 도입 필요성
 - 협력 안전진단 대기기 수립의 필요성



* First Author : wskang84@kst.or.kr, 044-330-2302

[†] Corresponding Author : hanbada@kst.or.kr, 044-330-2300